

## 10.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220호 1999. 12. 8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 및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장안에 쇼핑센터 및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만으로 주택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장과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에 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음식점·공연장·전시장 및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3호허목, 제7조제1항제6호커목 신설)
- 나. 종전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사하는 부분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때에는 신고만으로 이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함(제7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것 (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일반음식점 및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공원(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것(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3) 기념비

제7조제1항제6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제3호쿠목(1)·(3)·(4) 및 동호기목의 시설안에 설치되는 다음의 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2) 공연장 및 전시장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

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

련사무실·선수전용숙소

(4)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점과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5) (1) 내지 (4)의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제7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증축·개축 및 대수선. 이 경우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기존면적과 증축으로 증가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은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동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회보